

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정 2019년 12월 03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, 박사원과정 주임교수, 일반대학원과정 주임교수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③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1. 교육과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조사연구와 체계화에 관한 사항

제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한다.

제7조(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